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
2. 지방자치법 (개정).....5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5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6
5. 동물보호법 (개정).....7
6. 관광진흥법 (개정).....8
7. 산림보호법 (개정).....8
8. 공공외교법 (개정).....9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0

1.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11
2.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12
3.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13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4

1. 단체장 의회 사전 보고 규정 관련 (충북 충주).....15
2.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 관련 (전라남도)....18
3. 시의원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관련 (경기 성남).....23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 [제정 '23. 6. 1. 시행 '23. 6. 1.]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주택임차인보호과), 044-201-4175

■ 제정이유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함(제2조).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갓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3조).

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5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두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0조 및 제11조).

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15조).

아.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

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3조 및 제24조).

카.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의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2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7조).

하.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제28조).

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제29조).

지방자치법

2 [일부개정 '23. 6. 7. 시행 '23. 6. 7.]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일부개정 '22. 12. 6. 시행 '23. 6. 7.]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유연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면적에 대한 제한을 2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만 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5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 [일부개정 '23. 6. 13. 시행 '23. 6. 1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관리 실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사항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등을 추가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의 이용·관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소유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관광진흥법

6 [일부개정 '23. 3. 21. 시행 '23. 6. 22.]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림보호법

7 [일부개정 '22. 12. 27. 시행 '23. 6. 28.]

소관부서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함.

공공외교법

8 [일부개정 '23. 3. 28. 시행 '23. 6. 29.]

소관부서 :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02-2100-768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5. 19.]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와 피해직원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안 제8조)
- 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5. 18.]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하여 정의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공공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지도·감독함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제정이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다.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 (안 제6조~제7조)
- 라.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 (안 제8조~제11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호관련〕

[의견23-0127] 충청북도 충주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의 경우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일 뿐 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 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150] 전라남도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목)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가목)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가목),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목),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다목), 또는 그 밖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라목)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및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사업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의 취지가 같은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에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처우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등의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내용의 조례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각주: 법제처 2023. 3. 15. 의견제시 23-0074 참조)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의견23-0062] 경기도 성남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제2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 이라 한다) 제13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의 2-1의 다목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 3868호로 개정되어 2023. 2.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성남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나 성남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68호로 개정되어 2023. 2. 2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성남시 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위원회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점,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성남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례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위원회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2 제2호의 2-1의 다목1) 및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